#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622

발의연월일: 2025. 1. 17.

발 의 자:신영대·전재수·문금주

황 희 • 이개호 • 염태영

김용만 • 윤준병 • 안호영

박희승 · 김정호 · 김영환

박홍배 · 임광현 의원

(14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이 탄핵소추가 되어 직무가 정지되거나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한 범죄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아 구금되는 경우에도 상당한 보수가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사이에서 공직자의 책임성 및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특히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는 고위공직자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법적 제재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보수 지급에 제한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국가재정 운영의효율성도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음.

이에 탄핵소추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30%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구속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공무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하고자 함(안제47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7조의2(탄핵소추 등에 따른 보수 제한) ①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는 그 정지기간 중 30%를 감액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된 경우
  -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금된 경우
  -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범죄혐의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가 제한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 1. 탄핵소추가 기각된 경우
  - 2.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3. 공소가 기각된 경우
- 4.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경우
- 5.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한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수 제한 및 지급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및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47조의2(탄핵소추 등에 따른
	보수 제한) ① 「헌법재판소
	법」 제50조에 따라 권한행사
	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는 그
	정지기간 중 30%를 감액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1.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된 경우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u>금된 경우</u>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범죄혐
	의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
	수가 제한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
	여 지급한다.

- 1. 탄핵소추가 기각된 경우
- 2.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3. 공소가 기각된 경우
- 4.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경우
- 5.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한 경우
-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수제한및지급방법과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